

# 倫理綱領

2017. 02. 09

(주) 스맥

# 倫理綱領

## 전 문

【2017년 02월 09일 개정】

“정도경영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스맥은 고객에게 변함없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 실천을 통해 오늘과는 또 다른 내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주)스맥은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제 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주식회사 스맥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스맥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대상)

본 강령은 주식회사 스맥(이하“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 3 조 (고객존중)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 4 조 (고객만족)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기술, 교육, 자료 등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 5 조 (고객의 이익 보호)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제 3장 주주에 대한 윤리

### 제 6 조 (성실경영)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 정관과 사규 및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경영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 제7조 (투명성 유지)

경영자료는 기업경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존중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한다.

### 제 8 조 (주주의 알 권리)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나 제안은 존중한다.

## 제 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 9 조 (규범준수)

회사의 임직원은 실정법, 회사의 사규, 사회의 기본가치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 실정법을 준수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 ②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규와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③ 일상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전, 선물, 향응, 접대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모든 금융 및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성의 원칙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⑥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 ⑦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솔선수범한다.
- ⑧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 1) 상대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3) 직장에서 인터넷, 컴퓨터통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 4)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5) 고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⑨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⑩ 기타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 제 10 조 (상호존중)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① 기본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불손한 언동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 ③ 항상 단정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며,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학벌,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 제 11 조 (능력개발)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스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

- ① 글로벌 스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한 자기개발에 힘쓴다.
- ② 상급자는 하급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그에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며, 하급자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른다.
- ③ 회사는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 ④ 업무와 관련해서 습득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임직원이 함께 공유한다.

### 제 12 조 (삶의 질 향상)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 제 5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 제 13 조 (거래법규 준수)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 제 14 조 (공정한 거래)

- ①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 ② 모든 거래는 호혜의 원칙에 따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

친다.

③ 협력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과 거래절차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④ 독점 및 경쟁제한 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15 조 (상호발전의 추구)

① 협력회사와는 동반자적 자세로 대등한 계약질서를 유지하며, 상호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한다.

② 협력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③ 회사의 윤리헌장 및 강령을 협력회사에 전파, 홍보하여 협력회사가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 16 조 (협력회사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금지)

①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제공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기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금하고, 대출 보증의 수수 및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2) 협력회사로부터 금전차용을 해서는 안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동산, 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5)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 17 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① 회사의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건설하게 성장 발전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제 18 조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 회사의 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

어서도 회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 19 조 (안전 및 위험예방)

회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임직원, 협력회사 파견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경영사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회사 임직원은 내부 및 외부 고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준수에 최선을 다한다.

① 사고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안전사고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하며,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③ 각종 시설물(엘레베이터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고 화재 및 가스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힘쓴다.

### 제 20 조 (환경보호)

회사의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1 조 (노사화합)

모든 회사의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2 조 (국제경영규범의 준수)

회사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제 7장 보 칙

### 제 23 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회사의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 임원, 각 사업부서의 장 및 팀장은 소속직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 제 24 조 (교육)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윤리의식과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 강령의 교육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25 조 (포상 및 징계)

① 대표이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대하

여는 그에 상응한 포상 등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 또는 각 사업부서의 장은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  
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6 조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정착 및 강령의 실천, 이행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윤리경영 실천, 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27 조 (윤리강령 위반사항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항  
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홈페이지내에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회사 임직원은 내부공익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경중을 떠  
나 지체 없이 주관부서 및 해당부서의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내부공  
익신고자는 익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내부공익신고와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 회사 임직원은 내부  
공익신고 업무 전과정에 걸쳐, 내부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절대 누설하여  
서는 안되며,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 또는 부당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④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⑤ 연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한다.

⑥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적의 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협력업체에 대해 변상 조치를 한다.

#### 제 28 조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

①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징계관련 규정에 없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요 징계 대상 및 징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징계대상

-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 사내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 2) 징계내용

-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시 : 미신고자, 해당 직원 징계조치, 협력업체  
거래 중단(재발시 영구제명)

- 직권 이용 금품요구시 : 해당직원 징계 조치
-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시 : 징계위원회 심의 후 징계 여부 결정

### 제 29 조 (규정의 운영)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 부 칙 (2017.02.09)

### 1. 시행시기

이 강령은 2017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2.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실천 주관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3. 신고사항

이 준칙에서 정하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 임직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윤리강령의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임직원, 신규 임용자에게 서약서를 징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주소			
신고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고내용				
증거자료				
비고				